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62

는 서류에 한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상담회사의 지원) ① <u>법 제31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 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기 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 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회사의 지원) ① <u>법 제32조</u> ----- ----- ----- -----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상담회사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당해 상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인 자

4. ~ 5. (생 략)

② 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로 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30일내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

4. ~ 5. (현행과 같음)

② -----

----- 15일-----
-----,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이하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15일 -----

-----.

영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 략)

제3조(등록요건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영 벌표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기술분야 구 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 일 것

2-1. 영 별표 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 략)

3. 상담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 한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산자

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요건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1

2-1. 영 별표 1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삭 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다. 기타

-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지 번호 오류 등을 정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62, Fax : 042-472-397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27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담회사 등록취소 후 재등록을 위한 경과기간 삭제 등 상담회사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폐지하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담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 제한 규정 삭제(제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명시된 중복된 항목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항목 삭제

나. 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제3조, 제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의 상담회사 변경등록일에 따라 하위 지침인 운용규정을 개정